

지역복지계획수립과정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 협력 역할에 대한 인식연구

이 수 경*

제 미 순**

김 윤 경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 협력 역할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담당공무원과 민간위원 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협의체의 민·관 협력 역할은 협력수준,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위요인 협력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공동의사결정과 공동사업수행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군·구 지역에 비해 시단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계획

I. 서론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의 분권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2006년부터 수립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현재 3기(2015년~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이 지난 몇 년간 빠르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성숙되면서 지역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욕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구체화된 상황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

* 제1저자

** 교신저자

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 그리고 주민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구성 운영되는 협의구조를 말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강점을 살리면서 지역사회복지를 현실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채널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복지자원의 확충과 효율화 그리고 복지 서비스간 연계를 도모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충족 및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복지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특성이 반영된 민간과 공공의 협의구조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협의체 내 민·관 협력의 기초가 갖추어져야 된다. 이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분야,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한 위원들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의 단계적 경험을 통해 향후 지역사회단위의 복지문제 거버넌스의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야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입장과 이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많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여지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계획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거나 혹은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진단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김보영, 2014).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민·관 협력 역할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행과정에서의 민·관 협력의 역할에 대한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을 비교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 각자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한 계획이다(박태영, 2001). 따라서 이 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지역에서 공급하는 서비스 및 제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과제를 지역사회에 제시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한 지역수준에서의 복지과제 해결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분권화 전략추진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한 법적 기반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였는데,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관념적 틀을 바꾸어 놓은 것으로,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시설보호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을 지방자치와 지역구성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었다(김영모, 2006). 특히, 지자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해 매 4년마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전망에 맞추어 사회복지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김보영, 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 간에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변재관 외(2000)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여 이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주민참여를 토대로 공공·민간의 협동을 통한 해결의 모색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영모(2006)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계획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역사회조직의 자조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서구와 북구에서는 지역사회보호의 행정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결국,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 각자가 자기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시행되어 8년이 지난 즈음에, 다양한 문제점을 보고하고 있다. 안혜영 외(2007)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외부 용역기관에 의해 수립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태영(2006)은 지역사회복지 관계자들의 계획에 대한 낮은 인식, 계획 관련 전문가의 부족, 민·관의 협력체계 부족, 실질적인 주민참여 경험 및 참여기법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중기 계획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을 고려할 때(함철호 외, 201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협의체의 기능과 민·관 협력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설치되었다. 특히,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의 운영인 동시에, 매 4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자율성에 입각한 지역사회복지의 이행에 있다. 또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 운영지침을 통하여 ‘민관협력기구’로 행정적 기능을 통합하고 지역 내의 민관협력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게 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2009).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연계·조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원칙은 지역성, 참여성, 협력성을 바탕으로 지역중심의 복지정책과 다양한 제공주체와 수요자가 상호협력을 전제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핵심기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20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협치(governance)기능, 연계(network)기능, 통합적 서비스(integrative service) 기능이다. 이 중 협치기능은 지역복지의 주요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의사결정·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건의하는 것을 포함하며, 연계기능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조직화를 말하고, 통합서비스기능은 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과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완 외, 2012).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기능인 협치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한 기제이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 수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이재완 외, 2012). 왜냐하면 처음부터 관 중심의 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협치의 중요한 구조는 민·관의 대등한 파트너십, 복지욕구의 능동적 반영,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신뢰와 협력의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치(governance)는 처음부터 혼선을 빚어왔다(김창기 외, 2009; 이재완 외, 2012).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서 민과 관의 공동참여, 공동협력, 공동의사결정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민관협력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의 핵심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전제라고 있는 협력, 공동의사결정, 공동참여,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민과 관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와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민·관 협력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선행연구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합리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이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들(강혜규, 2003; 이영철, 2005; 박태영, 2006; 이재완, 2006; 정효정, 2009),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박광덕, 2003; 이기영 외, 2007)에 대한 연구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관련된 연구(강대선·류기형, 2007; 안영진, 2008)들이 있었다. 이재완의 사례연구(2006)에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각 주체들의 상호기능상의 연계 및 이해, 체계적 민관협력기구의 운영 필요성, 민·관 상호간 대등한 동반자 관계, 주민과의 직접적 접촉점 확보,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개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류기형 외(2007)는 경남 양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한 결과 주민참여방법이 형식적이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의 민·관 협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인희(2012)는 지역사회복지의 민·관 협력은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장치가 되며, 이를 위한 실천적 요소로는 복지거버넌스, 복지네트워킹, 민간의 자발적 복지참여라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과제는 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그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근간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책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연구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정병국 외(2007)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기능-조직-인력체계 재편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문제점으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안전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민관협의체가 이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업무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상호간 갈등을 제거하여 민·관 협력조직의 활용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민·관 협력의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민관협력의 주요 구성요소

연구자	주요 구성요소
이재완·김승용(2012)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 공동의사결정, 참여성, 책임성, 공동사업수행
초의수(2008)	참여, 네트워크, 협력수준, 의사소통, 상호인정, 공동결정, 공동책임
안태숙(2010)	상호의존성,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
소순창·유재원(2005)	정책책임자의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 조정, 네트워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완 외(2012)는 지역사회복지의 민·관 협력 구성요소로 참여 행위자의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 공동의사결정, 참여성, 책임성, 공동사업수행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의수(2008)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로컬거버넌스 핵심 영향요인으로 협의체의 복지 발전에 대한 기대인식, 위원의 자질, 의사소통, 효율적 회의 운영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책적 과제로서 운영 목적과 기능, 가치에 대한 홍보강화,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환경 조성, 의제설정과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 평가과정에서의 민·관의 대등한 관계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과제 및 시책 마련에 주력할 것을 제시하였다(윤준모, 2010 재인용). 또한 민·관 협력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들은 참여, 네트워크, 협력, 의사소통, 상호인정, 공동결정, 공동책임으로 규정하였다. 김창기 외(2009)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AHP모형(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해 한계요인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4개의 한계요인 중 지배체계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간

조정 및 협력강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조직구조요인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특히,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통한 협력체계구축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안태숙(2010)은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성 등에 따라 로컬 거버넌스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거버넌스 환경요인인 예산과 행정지원 등은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구성원 및 구성원 소속기관에 대한 신뢰가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안태숙(2010)은 민·관 협력의 구성요소들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요소들과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호의존성과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소순창·유재원(2005)은 거버넌스 즉, 협치기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영향력 관계를 전통적인 지역권력구조의 연구라는 차원에서 보지 않고,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행위자들을 동등한 파트너십의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정책행위자들의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 조정, 네트워크 관계로 보았다.

이상의 논의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성과 상호인정 등과 관련해서 협력수준으로 재구성하였고,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안태숙, 2010)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의 하위요인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선 협력수준에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두는 상호작용 체계(소순창·유재원, 2005; 초의수, 2008)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에서 민·관의 협력에 기초가 되는 파트너십의 정도와 상호 역할에 대한 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 하위요인은 공동의사결정으로 민·관 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으며(염일열·설상현, 2003; 김형양, 2004; 초의수, 2008), 정책적 결정과정에 관련행위자가 대등하게 참여하고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가지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이재완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의 의견이 불합리할 경우 민의 반대 의견 개진정도, 관의 민의 의견수렴정도, 의견이 반영정도,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 하위요인인 공동사업수행은 각 역할 집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정보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재완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진행과정에서의 의견반영 노력, 문제 해소, 실질적 역할 수행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 협력 수행정도에 대한 인식이 지역과 소속(민간과 공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요 요인을 추출하였고,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의 민간과 공공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민간 위원들은 시·군·구 단위의 민간복지시설과 기관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며 공공의 경우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들이다. 특히, 민간영역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민간·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위원을 대상으로 하여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시·군·구 지역별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시·군·구 지역별 민·관 협력 수행정도의 현황과 민·관의 인식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역을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는 주로 지역격차를 정치·행정적 요인에 따라 분석하는 연구에서 활발하며(최상한 외, 2014), 지역 간의 특성과 격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민과 관의 어느 한쪽의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관 상호협력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민간위원과 공무원의 인식정도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앞에서 언급한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을 하였다. 협의체 간사명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협의회 명부를 활용하였고 담당공무원 명부는 시·군·구의 협조를 받았다. 이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서베이(on-line survey)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65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설문을 제외한 총 450부(96.7%)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앞에서 논의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미 검증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문항은 총 1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고, 이것을 협력수준,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으로 구분하였다(초의수, 2008; 안태숙, 2010). 각각의 세부항목은 선행연구와 전국의 사회복지협의체 담당 공무원과 간사 및 민간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추출되었으며, 이와 같이 구성된 설문지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에 의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에 대한 하위변수 및 측정문항은 <표 2>와 같다. 변인들에 대한 측정도구는 측정항목의 선별과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요인추출 방법은 주축 요인추출과 요인추출 회전 방식은 베리맥스 직각회전법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협력수준은 총 5문항이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757~.898사이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의사결정은 총 5문항이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741~.879사이로 나타났다. 공동사업수행은 총 5문항이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834~.867사이로 분석되었다. 연구모형에 투

입된 변인들에 대한 KMO 표본적합도와 Bartlett 구형검정 역시 협력수준 .863, 공동의사결정 .812, 공동사업수행 .853으로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위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협력수준은 Cronbach's α =.902, 공동의사결정은 Cronbach's α =.867, 공동사업수행은 Cronbach's α =.904로 민·관 협력에 대한 각 하위 변수들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2〉 하위 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

하위 변수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신뢰도
협력수준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단계에서 민·관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한다.	.819	.902
	우리 지역의 협의체는 민·관이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98	
	우리 지역의 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882	
	우리 지역의 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의 민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지원한다.	.877	
	우리 지역의 민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757	
공동의사결정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들은 협의체 내의 의사결정 과정을 신뢰한다.	.779	.867
	우리 지역의 민은 관의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741	
	4개년 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야별로 민·관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가 있다.	.800	
	연차별 계획 및 평가과정에서 협의체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879	
	연차별 계획 및 평가과정에서 분야별로 민·관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시간이 있다.	.840	
공동사업수행	우리 지역의 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주체로 생각한다.	.867	.904
	욕구조사 등 계획 수립과정에서 협의체 내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850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주민욕구와 지역의 문제가 해소된다.	.840	
	관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834	
	각 실무분과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계획 및 평가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856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20.0을 이용하여 변인들에 대한 기초자료분석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집단특성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시 제시되는 빈도와 퍼센트는 결측값을 제외한 후 유효값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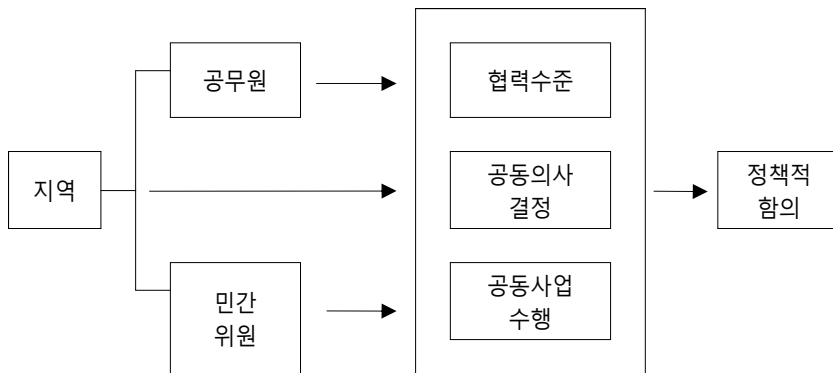
2. 분석틀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 협력 수행정도에 대한 인식이 지역과 소속(민간과 공공)에 따라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민·관협력은 다양

한 구성원들의 정책적 협력의 필요성과 상호관계에서 발생함으로 민·관의 협력 인식의 차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협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공무원과 민간위원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에 대한 이해와 이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인 함의를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선행연구를 통해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위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협력수준,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공무원과 민간위원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게 된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59.3%로 남성보다 다소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에서는 40대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30대가 29.1%, 50대 20.0%, 20대 5.4%이었다.

응답자의 소속구분에서는 민간위원이 87.8%, 공무원이 12.2%였으며 지역소재지의 기초단체 구분에서는 “시단위”가 58.7%로 가장 높은 분포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군단위”가 25.3%, “구단위” 16.0% 순이었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표본 수(%)	특성	표본 수 (%)	
성별	남성	183(40.7)	구분	민	395(87.8)
	여성	267(59.3)		관	55(12.2)
연령	20대	23(5.1)	소재지역 (기초지역)	시	264(58.7)
	30대	131(29.1)		군	114(25.3)
	40대	197(43.8)		구	72(16.0)
	50대	90(20.0)			
	60대 이상	9(2.0)			
계		450(100)	계		450(100)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민·관 협력에 대한 인식

본 연구 설문지의 모든 항목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평균값이 5점이면 모든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여, 4점이면 ‘그렇다’, 3점이면 ‘보통이다’, 2점이면 ‘그렇지 않다’, 1점이면 ‘매우 그렇지 않다’를 의미한다. 지역별 특성을 보기 위해 지역별로 구분하였으며, 민간위원과 공무원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간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민·관 협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간위원과 공무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t=-2.025$, $p=.043$), 세부항목에서 보면 협력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공동의사결정($t=-2.277$, $p=.023$), 공동사업수행($t=-2.414$, $p=.016$)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단위에서는 하위요인인 협력수준($t=-2.269$, $p=.024$), 공동의사결정($t=2.893$, $p=.004$), 공동사업수행($t=3.219$,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고, 군단위와 구단위에서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세부항목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협의체 내 민·관 협력에 대한 인식

항목	시			군			구			합계		
	민	관	t값	민	관	t값	민	관	t값	민	관	t값
협력수준	3.57	3.93	-2.269*	3.45	3.50	-.245	3.83	3.45	1.141	3.58	3.70	-1.045
공동의사결정	3.50	3.92	-2.893**	3.29	3.50	-1.243	3.65	3.60	.165	3.48	3.72	-2.277*
공동사업수행	3.29	3.77	-3.219**	3.05	3.37	-1.949	3.51	3.00	.156	3.27	3.54	-2.414*
전체	3.45	3.87	-2.973**	3.26	3.46	-1.094	3.66	3.35	1.014	3.44	3.65	-2.025*
N	237	27		90	24		68	4		395	55	

* $p<.05$, ** $p<.01$, *** $p<.001$

전국의 협의체 민간위원 및 공무원은 협의체 내 민·관 협력에 대해 보통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민간위원이 공무원에 비해 민·관 협력이 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세부항목으로 보면 공동의사결정이나 공동사업수행에서 공무원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높은 수준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의사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지역복지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협의체 내 민·관 협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민·관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협의체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2000년 초반 협의체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기도 부천시 등을 포함하여 전국의 시단위의 협의체들이 앞서가는 모델로 부상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시단위의 민간위원과 공무원의 인식차이가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현재 수준에서 좀 더 나은 차원의 민·관 협력에 대한 욕구가 위원들에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단위에서의 민간위원과 공무원보다 군단위의 민간위원과 공무원보다 모든 하부요인에서 민·관 협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군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민·관 협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협력수준에 대한 인식

<표 5>는 협의체 내의 민과 관의 협력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민간 위원과 공무원이 모두 협력수준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민·관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세부항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군과 구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단위에서는 민과 관이 협력수준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t=-2.269$, $p=.024$) 세부항목으로 보면 관의 역할인지($t=-2.667$, $p=.008$)와 관의 지원정도($t=-2.080$, $p=.038$)에서 민과 관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관은 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민은 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게 답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협의체 내 민이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에는 민과 관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협의체 내 역할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협의체에 대한 관의 지원 또한 공무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의 협력수준이 협의체 내 민·관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협력수준을 민·관 협력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표 5〉 협의체 내 협력수준에 대한 인식

항목	시			군			구			합계		
	민	관	t값	민	관	t값	민	관	t값	민	관	t값
구성단계 협력정도	3.66	4.00	-1.806	3.50	3.46	.176	3.93	3.25	1.904	3.67	3.71	-.303
파트너십 정도	3.56	3.85	-1.509	3.46	3.71	-1.075	3.93	3.50	1.075	3.60	3.76	-1.196
관의 역할인지	3.53	4.04	-2.667**	3.51	3.50	.046	3.71	3.25	.966	3.56	3.75	-1.359
관의 지원정도	3.41	3.81	-2.080*	3.34	3.54	-.898	3.66	3.50	.339	3.44	3.67	-1.706
민의 역할 인지	3.70	3.96	-1.523	3.44	3.29	.645	3.94	3.75	.514	3.68	3.65	.225
전체	3.57	3.93	-2.269*	3.45	3.50	-.245	3.83	3.45	1.141	3.58	3.70	-1.045
N	237	27		90	24		68	4		395	55	

* $p < .05$, ** $p < .01$, *** $p < .001$

2)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표 6〉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서 민·관의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결과이며, 협의체 내 공동의사결정 수준에 대해 민·관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t = -2.277$, $p = .023$). 이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민이 자유롭게 반대의견을 개진하는가에 대한 항목($t = -2.929$, $p = .005$)과 4개년 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야별로 논의하는 기회가 있는가에 대한 항목($t = -1.921$, $p = .055$), 그리고 연차별 계획 및 평가과정에서 민·관이 참여 및 논의하는 시간이 있는가에 대한 항목($t = -2.010$, $p = .04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군단위와 구단위에서는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단위에서 민과 관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t = -2.893$, $p = .004$). 세부항목별로 보면 시단위에서는 반대의견개진($t = -3.953$, $p = .000$), 분야별 논의기회($t = -2.821$, $p = .008$), 계획 논의시간($t = -2.651$, $p = .009$)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구단위에서는 분야별 논의시간 항목($t = -4.402$, $p = .000$)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민참여가 중심인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복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새로운 시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협의체의 협치(governance)기능을 가능하게 할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민·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높게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위원이 공무원에 비해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항목에서 보면 의사결정과정신뢰 항목에서는 민·관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반대의견개진, 분야별 논의기회, 계획논의시간 항목에서 민간위원이 공무원에 비해 더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공무원이 불합리한 의견을 제시할 때 반대의견개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분야별 논의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연차별 계획 및 평가에서도 논의할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민참여의 새로운 장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정에서 민과 관이 공동의사결정의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며, 민과 관이 인식하고 노력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사회 전반에 걸쳐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서 공동의사결정을 민과 관이 계속해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정책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6〉 협의체 내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항목	시			군			구			합계		
	민	관	t값	민	관	t값	민	관	t값	민	관	t값
의사결정과정신뢰	3.78	3.93	-0.845	3.64	3.88	-1.164	3.97	3.75	.648	3.78	3.89	-0.918
반대의견개선	3.32	4.00	-3.953***	3.28	3.42	-0.682	3.63	3.75	-0.264	3.36	3.73	-2.929**
분야별논의기회	3.54	4.00	-2.821**	3.18	3.33	-0.730	3.54	4.00	-4.402***	3.46	3.71	-1.921*
의견반영	3.39	3.74	-1.914	3.11	3.46	-1.609	3.59	3.00	1.296	3.36	3.56	-1.539
계획논의시간	3.49	3.96	-2.651**	3.26	3.46	-0.911	3.54	3.50	.093	3.44	3.71	-2.010**
전체	3.50	3.92	-2.893**	3.29	3.50	-1.243	3.65	3.60	.165	3.48	3.72	-2.277*
N	237	27		90	24		68	4		395	55	

* $p < .05$, ** $p < .01$, *** $p < .001$

3) 공동사업수행에 대한 인식

〈표 7〉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공동사업수행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로 공동으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한다는 인식이 민과 공무원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자 하였다. 앞의 하위요인인 협력수준이나 공동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보통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전체 평균값을 보면 세 가지 하위요인 중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민과 관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 = -2.414$, $p = .016$), 세부항목으로는 복지계획이 욕구반영 및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t = -3.593$, $p = 0.0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군단위와 구 단위에서는 민과 관의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단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3.219$, $p = .001$). 세부항목에서는 시단위에서는 세부항목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군단위에서는 욕구반영 및 문제해소 항목($t = -2.024$, $p = .04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7〉 협의체 공동사업수행에 대한 인식

항목	시			군			구			합계		
	민	관	t값	민	관	t값	민	관	t값	민	관	t값
계획수립주체인식	3.26	3.81	-3.586**	2.93	3.13	-0.900	3.51	2.75	1.729	3.23	3.44	-1.527
진행과정 의견 반영	3.53	3.85	-2.152*	3.11	3.42	-1.338	3.63	3.00	1.429	3.45	3.60	-1.103
욕구반영 및 문제해소	3.10	3.74	-2.585*	2.99	3.42	-2.024*	3.34	3.00	.837	3.12	3.55	-3.593***
계획 파트너 수행	3.31	3.74	-2.316*	3.17	3.50	-1.517	3.57	3.25	.799	3.32	3.60	-2.114
실질적 역할 수행	3.10	3.74	-3.994**	3.09	3.42	-1.532	3.53	3.00	1.141	3.26	3.55	-2.101
전체	3.29	3.77	-3.219**	3.05	3.37	-1.949	3.51	3.00	.156	3.27	3.54	-2.414*
N	237	27		90	24		68	4		395	55	

* $p < .05$, ** $p < .01$, *** $p < .001$

시단위에서 공동사업수행의 전체 항목에서 민과 관의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들은 평균적으로 국가의 지침에 의해 의견반영, 문제해소, 파트너십으로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민간위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협의체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군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값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면서 요구반영 및 문제해소 항목에서는 민간위원과 공무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군단위의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공동사업수행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치(governance)기능, 연계(network)기능, 통합적 서비스(integrative service) 기능 모두와 관련이 있다. 민·관 협력을 나타내는 세 가지 하위요인 중에서 민과 관의 협력관계를 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하위요인의 평균값이 민·관 모두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협의체 내 민·관 협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 및 지방정부는 공무원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역복지에 대한 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위원들이 공동사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아야 한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 협력에 대한 인식이 지역과 집단(민간과 공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민·관 협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공동의사결정과 공동사업수행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하위요인별로 지역과 집단간 차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수준에서는 시단위에서 관의 역할인지($t=-2.667$, $p=.008$)와 관의 지원정도($t=-2.080$, $p=.038$)에서 민과 관의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무원은 관의 역할을 알고 있으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협의체 내 역할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협의체에 대한 지원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단위에서는 반대의견개진($t=-3.953$, $p=.000$), 분야별 논의기회($t=-2.821$, $p=.008$), 계획 논의시간($t=-2.651$, $p=.009$) 항목에서 구단위에서는 분야별 논의기회($t=-4.402$, $p=.00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민간위원이 공무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즉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의견을 제시할 때 반대의견개진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분야별 논의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고 연차별 계획 및 평가에서도 논의할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공동사업수행과 관련해서 결과를 살펴보면, 시단위에서는 계획수립 주체인식과 진행과정 의견반영, 욕구반영 및 문제해소, 계획 파트너 수행에서 두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t=-3.219$, $p=.001$)를 보였으며, 군단위에서는 욕구반영 및 문제해소 항목($t=-2.024$, $p=.045$)에서 두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들은 평균적으로 국

가의 지침에 의해 의견반영, 문제해소, 파트너십으로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민간위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협의체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민·관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집단별로 상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협력 현황 정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오고 있으며, 민·관협력정도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과 민간위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단위와 군단위, 구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 협력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욕구와 기대치가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군의 민간위원이 모든 하부요인에서 민·관협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공무원 또한 군지역에서 민·관협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군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연구(2011)에서 민·관협치기능에 대한 분석에서 농어촌 지역(군단위)에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협력을 실현하는데 지역간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확립하여 관의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여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연구 결과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민·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높게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에 기인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최적화 될 수 있는 민주적 운영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협의체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함철호 외(2013)에 의하면 전국의 협의체들이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시군구는 3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민·관의 역할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행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평가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복지계획의 수립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함철호 외(2013)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시·군·구 승진자과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과목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욕구조사 등 계획수립과정에서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계획수립과정에서 민·관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주민욕구 및 지역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

관 위원 모두에게 주요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민·관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야별 또는 참여기관간에 사업형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동사업수행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로 공동으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한다는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시단위에서는 전체적인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재완 외(2012)의 연구에서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단지 협의체 조직 구조 안에서 작동하기 보다는 사업별, 분과별, 지역별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이것을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업 수행을 통해서 상호간에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로 연계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 및 연차별 계획 및 평가에서 실질적인 민·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 및 지방정부차원의 강력한 행정적인 지원의지가 필요하다.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4년을 다시 기다려야하며, 4개년 계획과정의 참여가 연차별 계획 수립 및 평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정에 민·관의 참여를 위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복지계획의 작성과 제출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해당 부서는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함철호 외(013)의 연구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 분과(아동분과, 청소년분과, 노인분과 등)에 구청 아동복지계장, 노인복지계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분과에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보직 순환으로 인해 협의체 내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지침에 의한 인지가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들의 경우에는 협의체 내 지위(실무분과위원, 실무협의체위원, 대표협의체위원)에 의한 인식 차이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며, 이와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 협력에 대한 각 요인간의 인과관계, 상관관계, 영향 요인 등을 분석하는 연구도 추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대선·류기형.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9(1): 27-53.
- 강혜규. (20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75: 75-83.
- 김보영. (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전략과 방향. 「보건복지포럼」, 208: 5-17.

- 김영모. (200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제와 방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창기·정재욱. (20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구축에 관한 연구: AHP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3): 262-269.
- 김형양. (2004).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6(1): 29-47.
- 류기형·박병현·이한욱. (2007). 중소도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3): 117-147.
- 박광덕. (200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보건복지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태영. (200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사회개발연구원.
- _____. (2006). 도농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방향에 관한 연구: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9: 137-165.
- 변재관·이인재. (2000). 참여형 지역복지 체계론. 나눔의집.
- 보건복지가족부·안정행정부. (20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20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_____. (2014). 2014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 소순창·유재원. (2005). 로컬거버넌스의 짧은 여행과 새로운 여정: 정책과정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299-319.
- 안영진. (2008). 지역격차의 새로운 차원으로서 지역발전정책 개발역량: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의 사례 연구. 「공간과 사회」. 29: 94-115.
- 안태숙. (2010).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 안혜영·김영중·정원오.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인력개발원.
- 염일섭·설상현. (2003). “로컬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마을 운동기 운동의 활성화 전략: 광주광역시 복구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윤춘모. (20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요인이 통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운대학교 대학원.
- 이기영·배은석·박해궁. (2007). 도농복합지역의 노인복지 비교 연구: 지역복지계획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연구」, 11(4): 247-264.
- 이영철. (2005). 지방분권화시대 지역사회복지계획 실천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7: 231-260.
- 이인희. (2012). 지역사회복지의 민관협력체계 연구. 「공공행정연구」. 13(2): 63-82.
- 이재완. (2006). 지역사회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9: 97-116.
- 이재완·김승용. (20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1): 131-157.

- 정병국·김필두. (200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 행정체계 정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효정. (2009).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제와 방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1: 139-163.
- 최상한·이시원·문유석. (2014).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공무원과 농민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395-418.
- 초의수. (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네트워크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265-290.
- 함철호·박태영·이재완·류만희·채현탁·김종건. (2013). 지역사회복지계획 중단기 발전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6(3): 255-285.

이수경(李壽京): 인제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장애인복지, 사회복지행정, 지역사회복지이다. 최근 주요논문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의 쟁점과 개선방안 모색(2012), 아동양육정책의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2013) 등이 있다(so30531@koje.ac.kr).

제미순(諸美順): 현재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간호학 및 사회복지학이며,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주요논문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2011), 지역사회 및 학교조직 ‘협력’에 기초한 아동영양교육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나타난 참여교사의 경험분석(2013)이 있다(msje@koje.ac.kr).

김윤경(金倫敬):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거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조직관리, 지역사회조직, 전달체계 등이다. 거제시사례관리회의 수퍼바이저, 제2기, 제3기 거제시지역사회복지계획 공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fander75@hanmail.net).

Abstract

Exploring the Perception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Role of Communit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n Community Welfare Planning

Lee, Soo-Kyung

Je, Mi-Soon

Kim, Yun-kyoung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role of communit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n community welfare planning. Data were obtained from 450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sisted of three dimensions. The finding of this study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members' perception of mutual decision-making and cooperative working.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the cities had more significant differences than others. According to the result, several alternatives were suggested for the activation of communit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based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Key Words: Communit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Community Welfare Planning.

